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풀이할 것

【문제 1】 (25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붙임 1) 갑은 (주)A에 상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25일에 퇴직하였다.

< 자 료 >

1. 재직 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6월 25일) 중 갑의 소득 자료

구 분	금 액
(주)A가 지급한 급여	30,000,000원
(주)A가 지급한 장기재직 공로금	5,000,000원
(주)A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1	6,000,000원
(주)A가 지급한 사내 특강료	1,000,000원
(주)A가 지급한 사내소식지 원고료*2	600,000원
외부 거래처 특강료*3	2,500,000원

- *1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임
- *2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
- *3 거래처가 갑에게 지급함

2. 퇴직 후(2021년 6월 26일 이후) 갑의 소득 자료

구 분	금 액
(주)A가 지급한 퇴직금	9,000,000원
(주)A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1	7,000,000원
(주)A 직원재교육 강연료	2,000,000원
(주)A 사원채용면접문제 출제 수당	1,000,000원
차량판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500,000원
슬롯머신 당첨금품*2	1,500,000원

- *1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임
- *2 1건에 해당하며 투입금액은 10,000원임

3.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요구사항 1>

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요구사항 2>

갑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	

(붙임 2) 거주자 을(54세, 한국 국적)의 2021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소득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	66,250,000원	총급여액 80,000,000원
이자소득	4,000,000원	예금이자로 원천징수됨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

구 분	나 이	내 용
부친	83세	소득 없음, 장애인
모친	79세	작물생산에 이용되는 논·밭 임대소득 6,000,000원
배우자	51세	소득 없음
딸	21세	소득 없음, 대학생
아들	15세	소득 없음, 중학생

3. 을의 소득공제 관련 내역

구 분	본인 부담분	비 고
국민연금 보험료	5,000,000원	회사가 부담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됨
건강보험료	4,000,000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3,000,000원	을은 무주택자임

4. 신용카드 사용내역^{*1}

사용내역	금 액
부친의 신용카드	5,000,000원
모친의 신용카드	4,000,000원
본인의 신용카드	15,300,000원 ^{*2}
배우자의 신용카드	10,000,000원 ^{*3}

- *1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음
- *2 국외에서 결제한 금액 3,000,000원 및 대중교통 사용분 300,000원이 포함됨
- *3 전통시장 사용분 4,000,000원이 포함됨

5. 교육비 관련 내역

구 분	교육비 내역	금 액
부친	장애인 특수 교육비 ^{*1}	2,000,000원
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1,500,000원
	대학원 등록금	4,000,000원
배우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1,000,000원
딸	외국대학 ^{*2} 등록금	10,000,000원
아들	교복구입비용	500,000원
	방과후학교 수업료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4,000,000원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급함
- *2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

6. 기부금 관련 내역

구 분	기부금 내역	금 액
부친	종교단체 기부금	500,000원
본인	수해 이재민구호금품	600,000원
	노동조합 회비	300,000원

<요구사항 1>

을의 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인적 공제액	기본공제액	
	추가공제액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요구사항 2>

을의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붙임 3) 거주자 병의 2021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이익

구 분	금 액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0,000원
주식 배당금	12,000,000원
양도가능채권 매매차손	△2,000,000원

2. 채권의 매매차익

구 분	금 액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20,000,000원
회사채 매매차익*	15,000,000원

* 회사채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000,000원이 포함됨

3. 병이 투자한 비상장법인 B로부터 받은 무상주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15,000,000원*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30,000,000원

* 지분을 상승에 해당하는 금액 2,000,000원이 포함됨

4. 기타 금융소득

구 분	금 액
직장공제회 반환금	50,000,000원*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000,000원*2
국내은행 지급 정기예금이자	8,000,000원
코스닥상장 C법인 인정배당*3	6,000,000원

*1 직장공제회(2011년 가입) 납입원금은 45,000,000원임

*2 원천징수 하지 않음

*3 결산확정일은 2021년 3월 31일임

5. 제조업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6.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요구사항 1>

거주자 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요구사항 2>

거주자 병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문제 2】 (5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양도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갑은 2015년 4월 20일 취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2021년 12월 31일에 양도하였다.

2. 양도 시 오피스텔의 양도가액과 시가는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시가
390,000,000원	400,000,000원

3. 양도 시 오피스텔의 장부가액 및 필요경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필요경비
200,000,000원*1	120,000,000원*2	25,000,000원*3

*1 노후된 오피스텔의 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 15,000,000원이 제외됨

*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임

*3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중개인 수수료 13,000,000원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이 지출한 명도비용 12,000,000원임

4. 양도한 오피스텔은 갑이 대주주로 있는 B법인 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취득과 관련하여 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20,000,000원이 있다.

<요구사항 1>

건물 양도로 인한 갑의 양도차익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	
양도차익	

<요구사항 2>

위의 자료 중 갑의 양도가액 및 시가가 다음과 같을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A법인의 세무조정 시에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갑에게 인정소득이 처분되었다.

양도가액	시가
400,000,000원	300,000,000원

(답안 양식)

양도가액	
------	--

【문제 3】 (20점)

(붙임 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 자 료 >

- (주)한국은 상품을 15,0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 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품은 7월 15일에 인도되었다.
- (주)한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주)A에게 40,000,000원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주)A는 인도받은 제품을 모두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 (주)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가 10,000,000원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제품 중 90%를 해외구호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고 10%는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 (주)한국이 무상 공급한 내역이다.

구 분	제 품		비 품
	직매장반출*1	집대비*2	복리후생비*3
원 가	4,000,000원	600,000원	2,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원
시 가	6,000,000원	900,000원	1,300,000원

- *1 직매장에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됨
- *2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제공됨
- *3 2020년 12월 15일에 취득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대표이사의 가사용으로 제공하였음

5. (주)한국의 기타 공급내역이다.

① 직수출로 2021년 5월 1일에 제품을 선적하고 받은 대가는 다음과 같다.

일 자	받은 대가	기준환율
2021.4.20.	\$12,000*1	1,000원/1\$
2021.5. 1.	-	1,100원/1\$
2021.6.25.	\$5,000*2	1,050원/1\$
2021.6.30.	-	1,150원/1\$

*1 \$12,000 중 \$10,000는 즉시 환가하였고, \$2,000는 과세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음

*2 \$5,000는 대가수령 즉시 환가하였음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검수조건부 수출로 갑과 을에게 공급한 내역이다.

구 분	갑	을
거래액	18,000,000원	3,000,000원
인도일	2021.3.10.	2021.4.15.
검수일	2021.6.18.	2021.6.30.
내국신용장개설일	2021.6.30.	2021.7.30.

<요구사항>

(주)한국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과세	영세율
1		
2		
3		
4		
5 - ①		
5 - ②		

(물음 2) 다음은 수산물도매업과 통조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대한(중소기업 아님)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예정신고기간 중 면세수산물 매입액은 없었고, 2021년 제1기 중에 면세수산물의 매입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 사용내역		
		과세	면세	과세+면세
기초	8,000,000	1,850,000	6,150,000	-
매입	63,400,000	14,400,000	5,000,000	40,000,000
기말	4,000,000			

2. (주)대한은 2021년 4월 15일에 수산물도매업과 통조림제조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트럭 2대(취득가액 합계 100,000,000원)를 구입하였다. 이 중 트럭 1대(취득가액 40,000,000원)를 2021년 6월 30일에 처분하였다.

3.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산물도매업	통조림제조업
2020년 제2기	90,000,000원	110,000,000원
2021년 제1기	80,000,000원	120,000,000원
2021년 제2기	90,000,000원	90,000,000원

4. (주)대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다.

<요구사항 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트럭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액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재계산액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매입세액공제액	
재계산으로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요구사항 2>

(주)대한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다음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추징액 차감 전)	
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중 추징액	

(물음 3)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대한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1년 6월 15일에 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였다. 양도일에 건물 및 부속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액은 없다.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기준시가	취득원가	장부가액
건물	100,000,000	200,000,000	200,000,000
부속토지	134,000,000	400,000,000	270,000,000
합 계	234,000,000	600,000,000	470,000,000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20년 제2기	60%	40%
2021년 제1기	70%	30%

<요구사항>

(주)대한이 일괄양도한 건물 및 부속토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공급가액	과세표준
건 물		
부속토지		

(물음 4)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태백의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태백의 신임담당자는 2021년 제1기 신고내역을 검토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① 2021년 6월 20일에 공급한 과세공급가액 4,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이러한 누락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다.

② 2021년 6월 10일에 공급받은 과세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확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

2. (주)태백은 위의 매출 및 매입 누락을 2021년 7월 31일에 수정신고하였다.

<요구사항>

(주)태백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가산세액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문제 4】 (25점)

(붙임 1)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주)백두(영리내국 법인)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자료 >

1.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1

구 분	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2
상가	750㎡	2021.4.1.~2022.3.31.	600,000,000원
주택	250㎡	2021.4.1.~2023.3.31.	400,000,000원

*1 임대건물은 단층으로 해당 부속토지는 2,000㎡이고, 상가부속토지와 주택부속토지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2 상가임대보증금은 2021년 3월 16일에 수령하였으며, 주택임대보증금은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다.

2. 상가임대료로 매월 말 3,000,000원을 받기로 계약 하였으나,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하여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주)백두는 제21기에 미수임대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3. 주택임대료로 매월 말 5,000,000원을 받기로 계약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월임대료의 합계인 120,000,000원을 임대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주)백두는 이를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임대용 건물을 350,000,000원(토지가액 100,000,000원 포함)에 취득 시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 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건물에 대한 지출은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할 수 없다.

5. 상가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은 수입이자 2,000,000원과 신주인수권처분이익 500,000원이며, 주택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은 수입배당금 1,000,000원과 유가증권처분손실 1,500,000원이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2%이다.

<요구사항 1>

(주)백두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한다. (주)백두의 제21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린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백두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며 장부를 기장 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제21기 간주임대료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 금액은 버린다.

(답안 양식)

간주임대료	
-------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소백(중소기업)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5,000,000,000원이며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업외손익에 부산물 판매액 1,5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 ② 당기말에 수탁자가 판매한 10,000,000,000원을 제22기 초 대금회수시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③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10,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189,000,000원이다. 이 중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2,500,000원이며 그 외의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3만원 이하	건당 3만원 초과	합 계
영수증 수취건	1,500,000원	12,000,000원	13,500,0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건	16,000,000원	85,000,000원*	101,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건	10,000,000원	62,000,000원	72,000,000원
합 계	27,500,000원	159,000,000원	186,500,000원

* 임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됨

3.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100곳에 개당 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시계를 광고선전품으로 제공한 금액 8,00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하였다.
- ② 자체 생산한 제품(원가 3,000,000원, 시가 5,000,000원)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복리후생비	5,000,000	
세금과공과	500,000	
(대) 제품		3,000,000
잡이익		2,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③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15,00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

4.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요구사항 1>

(주)소백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부인대상 접대비 해당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시부인대상 접대비 해당액	
---------------	--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과 관계없이 시부인대상 접대비 해당액을 200,000,000원으로 가정하고 (주)소백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접대비 한도액 계산	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붙임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라(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자 료 >

1. (주)한라의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A사립대학 장학금: 100,000,000원*
 - * 장학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어음의 결제일은 2022년 3월 1일임
 - 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 50,000,000원
 - ③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6,000,000원*
 - * 생산한 제품을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특수관계 없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것으로, (주)한라는 동 제품의 원가 6,000,000원(시가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계상함
 - ④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구호금품: 25,000,000원
 - ⑤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4,000,000원
2. (주)한라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 10,000,000원인 비품을 15,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제20기의 세무조정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
 - ② 비지정기부금 부인액: 5,000,000원
4. 제19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120,0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주)한라의 제21기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한라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이 4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당기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해당액	
지정기부금 해당액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설악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설악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의 당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충당금

당기상계	200,000,000원	전기이월*	450,000,000원
차기이월	570,000,000원	당기설정	320,000,000원
합 계	770,000,000원	합 계	770,000,000원

* 전기말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의 부인누계액(유보)은 50,000,000원임

2. 당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연금충당금 2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30,000,000

3. (주)설악의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험수리적기준: 910,000,000원
- ② 일시퇴직기준: 900,000,000원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전기이월	450,000,000원	당기지급*	230,000,000원
당기예치	410,000,000원	기말잔액	630,000,000원
합 계	860,000,000원	합 계	860,000,000원

* 당기지급액은 모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됨

5.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은 100,000,000원이며,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유보)은 20,0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주)설악의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요구사항 2>

(주)설악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중 1번은 고려하지 않으며, 2번의 분개 중 '퇴직연금충당금'을 '퇴직급여'로 한다. 전기말 현재 신고조정에 의한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유보)이 400,000,000원일 때 퇴직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5】 (15점)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영리내국법인)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한국은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반품가능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말 반품추정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매출	30,000,000원	-
매출원가	-	7,500,000원*

* 반품자산 예상가치는 30,000,000원×25%임

2. 2021년 반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 18,000,000원
 - ② 당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 120,000,000원
3.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매출 중 반품추정액은 35,000,000원이며, 반품자산의 예상가치는 매출액의 25%이다.
4. (주)한국의 2021년 반품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기말 반품추정액의 반품기간 종료
 - 가. 환불충당부채 회계처리
 - (차) 환불충당부채 30,000,000
 - (대) 매출채권 18,000,000
 - 매 출 12,000,000
 - 나. 반환제품회수권 회계처리
 - (차) 제 품 4,500,000
 - 매출원가 3,000,000
 - (대) 반환제품회수권 7,500,000

- ② 당기 매출 중 당기 반품액
 - 가. 반품의 매출 및 매출원가 회계처리
 - (차) 매 출 120,000,000
 - 제 품 72,000,000
 - (대) 매출채권 120,000,000
 - 매출원가 72,000,000
 - 나. 반품된 제품의 평가손실 회계처리
 - (차) 제품평가손실 42,000,000
 - (대) 제 품 42,000,000
- ③ 당기말 반품추정액 회계처리
 - (차) 매 출 35,000,000
 - 반환제품회수권 8,750,000
 - (대) 환불충당부채 35,000,000
 - 매 출 원 가 8,750,000

5.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요구사항>

(주)한국의 반품조건부 판매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물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주)한국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당기순이익	25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00,0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20,000,000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30,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 대상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됨

2. (주)한국의 법인세법 상 비과세소득은 45,000,000원이다.

3.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이며, 제10기에 발생한 15,000,000원과 제15기에 발생한 2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한국은 외국에 본점을 둔 A사에 해외투자(투자지분 30%, 투자일 2018년 1월 1일)로 당기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수입배당금	50,000,000원*
A사의 소득금액	350,000,000원
A사의 법인세액	100,000,000원

*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이에 대한 국외원천징수세액 5,000,000원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세무조정 시 가산조정 되었음

5.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통합투자세액공제	18,000,000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600,000원

6.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이다.

<요구사항 1>

(주)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과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5,000,000원으로 가정하고 (주)한국의 총부담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감면후 세액	
최저한세	
총부담세액	

【문제 6】 (10점)

(붙임 1) 다음은 2021년 6월 15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 중 주식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상속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인 (주)한국의 주식이며, 상속개시 당시 갑의 보유주식은 50,000주(총발행주식수 125,000주 중 40%에 해당)로 갑은 최대주주이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한국의 순자산가치는 7,00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선급비용: 100,000,000원
 - ② 영업권 평가액: 1,000,000,000원
 - ③ 수선충당금: 600,000,000원
 - ④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0원*
 - * 퇴직급여추계액과 일치함
3. (주)한국의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3년간의 각 사업 연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으며,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의한 금액은 없다.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순손익액	300,000,000원	200,000,000원	140,000,000원
4. (주)한국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10%,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은 20%이다.

<요구사항>

상속재산인 (주)한국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평가액	
비상장주식 평가액	

(붙임 2) 다음은 거주자 을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부친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비상장 내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을이 해당 주식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없다.

구 분	금 액
주식 취득가액	100,000,000원
취득한 주식의 등록일 현재 가액	500,000,000원*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8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됨
3. 을은 해당 주식이 등록되기 1개월 전 450,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다.

<요구사항>

을의 주식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금액	
증여재산가액	

- 끝 -

여백